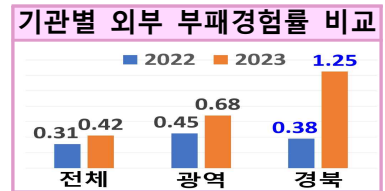

- 경상북도 청렴 시책 추진 사례 -
공사·용역분야 부패근절 제도구축 및 예방

공사·용역분야 부패근절 제도구축 및 예방

1. 배경 및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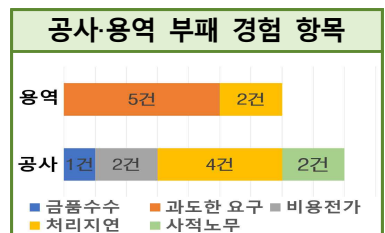
◇ [청렴도평가 결과] 공사·용역 분야 부패경험 가장 취약, 심각성 노출

- (권익위 청렴도평가) 외부채감도 부패경험은 전체 대비 3배, 동일 유형대비 2배 발생,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북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집중개선이 요구됨



* ('23년 분야별 부패경험률) 공사분야(2.08%, '22년 대비 2배 이상↑), 용역분야(0.83%, 신규발생)

- (자체 청렴도평가) 외부청렴도 최근 3년간 최저, 공사·용역 분야는 최근 4년간 최저, 공사·용역 분야의 부패경험 다수 발생



* (부패경험) 용역감독 과도한 요구^{5건}, 처리지연^{2건}
공사감독 금품수수^{1건} 비용전가^{2건}, 처리지연^{4건}, 사적 노무요구^{2건}

◇ [관행적 부패] 발주청 우위 문화 등에 따른 투명성·반부패 저해요인 존재

- (설계변경) 감독관서 위주의 해석으로 사업특성 및 현장상황을 고려한 설계변경 미흡
* 공사·용역 불만사항(전체 146건) 해피콜 조사결과 : 설계변경 미흡 39건(26.7%)
- (부패신고) 신분노출 우려에 따른 부패신고 및 공익제보 기피
* 심층면접조사 결과 부패신고 익명성 보장 및 비위신고 접근성 강화 요구 50%(5명)
- (인식부족) '이 정도쯤이야' 하는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부패 발생

☞ [시사점] 외부채감도에서 강력한 적색경보, 청렴도평가 분석 및 민원만족도 조사를 종합하면 공사·용역분야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및 신고·처리 시스템 구축 시급

2. 주요 추진내용

민·관 업무소통 강화

- ▶ 청렴동행협의체 운영
- ▶ 설계변경자문단 운영

부패방지 시스템 혁신

- ▶ 안심번호사 도입
- ▶ 해피콜 고도화+제도개선

공직감찰과 처벌 강화

- ▶ 레드카드퇴출제
- ▶ 고발규정 강화

◇ [제도구축] 현장 소통으로 공사·영역 분야 부패 유발요인 제도적 개선 주력

① 공사·용역 분야 민·관 청렴 거버넌스 「多가치 청렴동행 협의체」 구성·운영

- (목적) 공사·용역 분야 정책소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
- (실적) 협의체 회의(1회), 청렴협약 체결, 청렴동행 캠페인 전개, 청렴시책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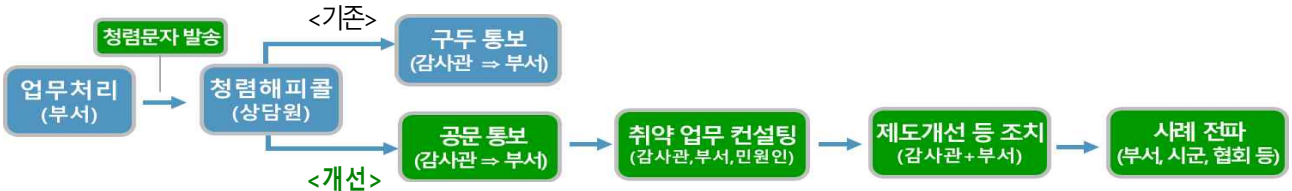
* 도지사, 건설·산림·소방 관련 협회장(8명), 관련 실국장(9명) 18명으로 구성

② 공사분야 「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」 운영

- (목적) 시공사에 부담 전가, 갑질 등 공사 설계변경 관련 부패 차단
- (실적) 구성(8명 / '24. 2.), 설계변경 자문 요청에 대해 5건 자문 처리
* (사례)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폐기물처리비용 설계 반영 관련 발주처와 시공사 이견에 대한 자문 해결

③ 부패유발 「상시 모니터링 시스템」 고도화

- (목 적) 업무처리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만사항 적기 해소로 부패리스크 차단
- (실 적) 불만 접수(공사·용역 22건) 및 조치, 취약분야 청렴컨설팅(10회), 제도개선



④ 부패유발 특혜제공 및 재량남용 제도개선 추진

- (목 적) 해피콜 토대로 부패유발 가능성이 높은 특혜·재량남용 업무를 발굴·개선

- | | |
|--|---|
| ① 건설공사·용역 수의계약 횟수 제한
• 동일 업체에 年 부서별 최대 3건 → 2건 | ② 산림공사 레미콘 소운반비 반영
• 도로의 경사도, 커브 등 전복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 |
| ③ 산악지형에 따른 레미콘 노임할증 반영
• 산악지, 경사지 등에 따라 20~ 50% 할증 반영 | ④ 산림토목공사 업무절차 간소화 (3종)
• 감리보고서 전자접수, 감리원 날인 폐지, 공사계약서류 간소화 |

◇ (부패예방) 공무원의 청렴규범과 처벌 강화로 부패행위 예방체계 확립

① 부패취약분야 담당 공무원 & 업무 관련자 청렴교육 강화

- (목적) 공사·용역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 공무원, 업무 관련자에 대한 청렴인식 제고
- (실적) 공무원·관련자 청렴 대면교육 의무화('24. 7. 조례 개정), 청렴교육 (10회 1,526명)
 - ① **공무원·공사관련자 청렴 동행교육**
• 현장대리인, 책임기술인, 감독공무원 대상 공사·용역 맞춤형 교육 (6회 1,116명)
 - ② **부패취약업무 담당 공무원 청렴 대면교육(1시간) 의무화 시행**
• (기존) 사이버 교육 2시간 → (변경) 매년 대면 1시간 포함 2시간 이상 (2회 250명)
 - ③ **도지사와 함께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워크숍**
• 민원응대 친절교육(연극), 도지사와 민원 공무원 간 대화 (2회 160명)

② 비위공무원 「레드카드 퇴출제」 시행 및 「고발 규정」 강화

-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통한 경각심 제고

① 비위공무원 레드카드 퇴출제 시행 ('24.5.)

- 중대비위(금품수수, 횡령 등 행위자 중징계 의결 요구
- 징계 감경 제외, 수사 의뢰, 퇴직 후 재취업 제한

② 비위공무원 고발 규정 강화 ('24.6.)

- 공무원 비위 고발기준 하향
(기존 2백만원 → 1백만원)

③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신설, 「안심변호사」 도입

- (목적) 부패·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으로 부패·공익제보 활성화
- (실적) 운영 근거 마련('24.6. 훈령 개정), 전담 변호사 2명(남·여) 위촉 ('24.9.1.)

④ 공무원 청렴행동 규범 강화

- 부패취약 업무 맞춤형 예방시스템 확립으로 공직자 청렴의식 내재화

① 공무원 청렴행동 가이드라인 시행

- 공적업무 외 민원인 접촉, 공적 장소 외 만남 금지
- 업무처리 기준, 절차, 처리계획, 기한 사전 공개 등

② 부패취약업무 청렴이행 점검(체크리스트) 의무화

- 대가 없는 과업지시, 설계변경 제한(거부)
- 불필요한 서류 요구, 업무처리 지연 등

3.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

처 별 강 화 부작용해소	장애요인 레드카드 퇴출제, 고발규정 강화,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부패행위 처벌강화에 대한 공직분위기 위축과 복지부동 우려 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활성화하고,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표명(부서 간담회, 언론보도 등)
재 도 개 선 적극 대응 분위기 확산	장애요인 청렴해피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부분 및 청렴 저해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부서의 미온적 대응 □ 감사관 주재 관련부서와 일대일 청렴컨설팅과 토론, 청백리 회의 등을 통한 부서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냄
설 계 변 경 자문 신청 적극 활용	장애요인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이 홍보 부족과 발주청의 참여 부족으로 신청 저조 □ 관련협회, 언론보도,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공사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 안내

4. 추진성과

- **공무원 비위신고 감소 및 대민 업무만족도 지속적 상승**
 - 공무원 비위신고 전년대비 26%(9건) 감소('23년 34건 → '24년 25건)
 - 민원인 대상 업무만족도 지속적 상승[8.69(1월) → 8.74(4월) → 9.37(7월) → **9.71(11월)**]
- **특혜, 재량남용, 갑질 등 구조적·관행적인 부패요인 발굴·개선으로 부패행위 차단**
 - 부패에 취약한 공사·용역분야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으로 부패차단
 - 건설협회 등 유관단체와 청렴정책 파트너십 상시 구축 및 청렴문화 확산
- **부패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부패 예방체계 확립**
 - 안심변호사(비실명 대리신고)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 및 신고 접근성 제고
 - **전국 최초 부패취약업무 담당자 대면교육 의무화**로 공무원&사업자 청렴인식 제고
 - 레드카드 퇴출제, 고발규정 강화로 공무원 부패유인 감소

5. 우수사례 선정 사유

- 공사·용역 관련 부패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, 제도의 취약점 개선, 신고자 보호, 피드백 강화 등 공공기관에서 효과적 적용이 가능
- 제도 시행을 통한 공무원 비위신고 감소, 민원인 만족도 향상 등 성과가 검증된 청렴 시책으로 공사·용역 청렴도 향상을 위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

√ 해당 사례가 '22년도~'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'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'에 해당 여부	예 ☒	아니오 ☐
√ 과제 제출 년도 * ('22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⑤번, ('23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, ('24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	'22년 ☐	'23년 ☐ '24년 ☒
√ '22년도~'24년도 미평가기관에 해당(자율과제 제출)	예 ☐	아니오 ☒